

법인회비 산출규정

계리사회 내규 제 10 호

제 정 2015. 9. 4.

개 정 2024. 9. 2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보험계리사회(이하 “우리회”) 회비규정에 따라 법인회원사의 법인회비 산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류) 법인회비는 다음 각 호의 업권별로 분류하여 산출한다.

1.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재보험사
2. 공제기관(우체국금융개발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을 포함한다)
3. 보험계리법인·컨설팅사
4. 유관기관(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을 포함한다)

제3조(산출항목) ① 제2조에 따라 분류된 업권별 법인회비 산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재보험사: 총자산 및 보험수익(보험수익과 재보험수익의 합을 의미한다)
2. 공제기관: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
3. 보험계리법인·컨설팅사: 매출액
4. 유관기관: 별도 산출항목 없음

② 차년도 법인회비 산출을 위해 필요한 제1항에 따른 산출항목은 다음 각 호에 공시된 자료를 근거로 한다.

1. 생명보험사: 직전년도 말 기준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월간생명보험통계(총자산: I.사업개황, I-2. 총 회사별 사업개황, 보험수익: II.재무제표 II-2. 포괄손익계산서(총괄))
2. 손해보험사·재보험사: 직전년도 말 기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손해보험통계> 분기별 통계>주요지표)
3. 공제기관: 직전년도 말 기준 각 공제기관 홈페이지 공시자료
4. 보험계리법인·컨설팅사: 직전년도 말 기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시자료
5. 유관기관: 별도 공시자료 없음

제4조(산출기준) 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차년도 법인회비로 정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산출항목(총자산 및 보험수익)에 해당되는 구간의 값을 구하며, 각 구간은 다음 표와 같다.

[총자산 분]

(단위 : 만원)	
구간	산출값
3 0 0 조 원 초 과	1,600
200조원초과 300조원이하	1,400
150조원초과 200조원이하	1,200
100조원초과 150조원이하	1,000
70조원초과 100조원이하	800
60조원초과 70조원이하	600
50조원초과 60조원이하	550
40조원초과 50조원이하	500
30조원초과 40조원이하	450
20조원초과 30조원이하	400
15조원초과 20조원이하	350
10조원초과 15조원이하	300
5조원초과 10조원이하	250
3조원초과 5조원이하	200
1조원초과 3조원이하	150
1 조 원 이 하	100

[보험수익 분]

(단위 : 만원)	
구간	산출값
3 0 조 원 초 과	1,600
20조원초과 30조원이하	1,400
15조원초과 20조원이하	1,200
12조5천억원초과 15조원이하	1,000
10조원초과 12조5천억원이하	900
8조5천억원초과 10조원이하	800
7조원초과 8조5천억원이하	700
6 조 원 초 과 7 조 원 이 하	600
5 조 원 초 과 6 조 원 이 하	550
4 조 원 초 과 5 조 원 이 하	500
3 조 원 초 과 4 조 원 이 하	450
2 조 원 초 과 3 조 원 이 하	400
1 조 원 초 과 2 조 원 이 하	350
5 천 억 원 초 과 1 조 원 이 하	300
3천5백억원초과 5천억원이하	250
2천5백억원초과 3천5백억원이하	200
1천5백억원초과 2천5백억원이하	150
1 천 5 백 억 원 이 하	100

2. 1항에서 구한 총자산 분 산출 값과 보험수익 분 산출 값을 총자산 분에 70% 가중치, 보험수익에 30% 가중치를 두고 합산하며 세부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산출식
(직전년도 총자산분에 해당하는 산출 값 x 0.7 + 직전년도 보험수익분에 해당하는 산출 값 x 0.3) x 2

3. 2항에서 합산된 값을 50만원 단위로 올림한 금액을 해당 회원사의 차년도 법인회비로 정한다.

②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 산출항목(총자산 및 수입보험료)에 해당되는 구간의 산출 값을 합산하여 차년도 법인회비로 정하며, 각 구간은 다음 표와 같다.

[총자산 분]

(단위 : 만원)	
구간	산출값
3 0 0 조 원 초 과	1,600
200조원초과 300조원이하	1,400
150조원초과 200조원이하	1,200
100조원초과 150조원이하	1,000
70조원초과 100조원이하	800
60조원초과 70조원이하	600
50조원초과 60조원이하	550
40조원초과 50조원이하	500
30조원초과 40조원이하	450
20조원초과 30조원이하	400
15조원초과 20조원이하	350
10조원초과 15조원이하	300
5조원초과 10조원이하	250
3조원초과 5조원이하	200
1조원초과 3조원이하	150
1 조 원 이 하	100

[수입보험료 분]

(단위 : 만원)	
구간	산출값
6 0 조 원 초 과	1,600
40조원초과 60조원이하	1,400
30조원초과 40조원이하	1,200
25조원초과 30조원이하	1,000
20조원초과 25조원이하	900
17조원초과 20조원이하	800
14조원초과 17조원이하	700
12조원초과 14조원이하	600
10조원초과 12조원이하	550
8조원초과 10조원이하	500
6조원초과 8조원이하	450
4조원초과 6조원이하	400
2조원초과 4조원이하	350
1조원초과 2조원이하	300
7천억원초과 1조원이하	250
5천억원초과 7천억원이하	200
3천억원초과 5천억원이하	150
3 천 억 원 이 하	100

③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회원사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출항목(매출액)에 해당하는 구간의 산출 값을 차년도 법인회비로 정하며, 각 구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만원)	
구간	산출값
1 0 0 억 원 이 상	400
5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300
2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250
2 0 억 원 미 만	200

④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회원사의 차년도 법인회비는 별도의 산출기준 없이 일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산출결과 안내)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각 회원사의 차년도 법인회비는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회원사에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기준 시행 후 2개년 법인회비에 대해서는 각 회원사 법인회비의 최대 증·감액은 직전년도에 각 회원사가 납부한 법인회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10%를 초과하여 산출되는 경우 10% 이내에서 만원 단위를 절사하여 차년도 법인회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과규정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회원사에 한하여 적용한다.